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1158

(ම) COFFEE PUB's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5-11-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5-13

### 커피펍스

#### 정보공개서

(주)도남에프앤에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도남에프앤에프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 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대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부 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1로 12, 에이스하이테크비전21 1217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1-242-8424 가맹사업부 전화번호: 031-242-842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1-252-1702

# 목 차

Ι.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٠4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8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8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4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	28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0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1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32

#### ※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별첨4] 가맹본부 재무제표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 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 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커피펍스 외1	경기도 의왕시 오	봉산단1로 12	2, 에ㅇ	]스하이	외식업 외		
	71911 - 91	테크비전21 12173						
(주)도남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에프앤에프	2011-12-07	2011-12-09	이정희	이정희 031-242-8424		031.252.1702		
	법인등록번호	134511-0181179	134511-0181179 사업자등록번호 142-		-81-42282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오	봉산단1로 12,	에이스하이테크	
대표자	이정희	커피펍스 외1	비전21 1217호			
",—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이정희	031-242-8424	031-252-1702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커피펍스'라 합니다)의 내용

#### 1) 회사 안내

2003년 계열사 법인설립 이래 극장 운영과 부동산 개발을 기반으로 하면서 2010년 외식업으로의 진출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직영 매장, 가맹점 및 영화관 등 특수상권 운영 경험을 통해 수 년간 성장해온 ㈜도남FNF는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외식전문 기업입니다.

가맹점 물품공급, 상품개발, 가맹점 운영에 대한 마케팅 기획을 통하여 고객의 니즈 를 파악하고 가맹점의 요구에 맞는 마케팅 서비스를 창출해 나갑니다. 안정적인 가맹 점 운영도 높은 가맹점 수익도 ㈜도남FNF가 모두 약속합니다. ㈜도남FNF는 Family Networks Franchise는 프랜차이즈 가족 기업망이란 뜻을 의 미합니다. 외식사업 전문가 집단으로서 여러분의 성공창업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커피펍스	_
상 호	커피펍스 OO점	_
상표(서비스표)	OFFEE PUB's	_
광고	-	_
그 밖의 영업표지	-	_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720,816	811,852	-91,035	424,400	159,267	168,406
2022년	1,071,100	849,340	221,760	963,832	206,857	212,795
2023년	973,495	1,199,748	-226,252	748,192	-429,949	-448,013

※ 별첨4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一	이급	선석기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정희	대표	2011.12.~현재	(주)도남에프앤에프 대표	회사 업무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八名 L	상근	비상근	주천구(경)
2023년 12월 31일	1	_	3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도남 에프앤에프	가맹사업 경영	2014.01~현재	SHAKE POTATO(쉐이크포테이토) (등록번호: 20120100075)라는 영업표지의 가맹 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출원 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OCOFFEE PUB's (상표, 서비스표)	외장,인테리어 ,영업표시	_	-	_	
SHAKE POTATO 제조방법 (특허권)	제품사용	출원일자: 2013.07.01 등록일자: 2014.01.09	출원번호: 1020130076544 등록번호: 제10-1351909	주식회사 도남에프앤에 프 대표자 이정희	2033.07.01
튀김장치 (특허권)	제품사용	출원일자: 2015.10.07 등록일자: 2016.02.15	출원번호: 1020150140835 등록번호: 제10-1595876	주식회사 도남에프앤에 프	2035.10.0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원 준비 중인 상표는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a href="http://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5년 11월 26일

#### 2.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도남에프	카페커피펍스	이정희	2015.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앤에프		임의빈	~ 2015.12	950, 362호 (조원동)
(주)도남에프	커피펍스	이정희	2016.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앤에프		임의빈	~ 2016.07	950, 362호 (조원동)
(주)도남에프 앤에프	커피펍스	이정희	l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1로 12, 에이스하이테크비전21 1217호

####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चो हो हो ४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펍스	커피	커피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2	_	2	2	_	1	1	_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	_	-	-	-	_	_	_
대구	_	-	_	-	-	-	_	_	_
세종	_	-	_	-	-	-	_	_	-
인천	_	-	_	-	-	-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1	1	_	1	1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	_	-	-	_	_	_
충북	-	-	-	-	-	-	-	-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1	1	_	1	1	_	1	1	_
경북	_	_	-	_	-	-	_	-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 5. 바로 전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_	_	_	_	2
2022	2	_	_	_	_	2
2023	2	_	_	1	_	1

####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당해 브랜드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사호/하르	여어교기	정보공개서	어 조	가맹	점/직영점의	의 수	
	丁七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도남 에프앤에프	SHAKE POTATO (쉐이크포테이토)	20120100075	외식업	5/0	4/0	0/0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커피펍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0 6 7 8 6		지역 20	023년말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	----

	기메리 스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연간 매출 <sup>안</sup>	· 평균   (상한)		평균 (하한)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	80,303	1,912	80,303	1,912	80,303	1,912	1곳만	산정
서울									
부산									
대구									
세종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	해당없음						5곳 대	미만
경북									
경남									
제주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 매출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커피펍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2,691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해당사항 없음.(가맹사업 외의 광고 및 판촉비만 필요시 발생)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전자뱅킹사업부	각 지점 및 인터넷뱅킹	02-2002-521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 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므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의탁자,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점포설비, 기기,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8,800	계약체결 후 예치	영업 개시 이 전 까 지 계약 해제		1. 가입비 2. 영업 노하우, 가맹점운영권부여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 계약 해제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 을 공제후 반환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예치	실시 전	실시 후	_
총계	11,000	_	_	_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1,000		가맹계약 미이행, 공급물품대금, 경 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 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채무, 손해배상액 등과 정산후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8,8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1,000	부가세 없음
합계	12,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 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①)		22,000~ 40,000	2,200~ 4,000	<ul><li> 착수금(계약시): 40%</li><li> 중도금: 40%</li><li> 잔금(완공시): 20%</li></ul>	공사시작 전 위약금 공제후 반환	
간판	자율선택	3,750~ 5,000				
주방비품		1,430~			설치전 위약금 공제후 반환	도 반화   '10평
주방기기(※②)		5,500~ 15,000				기준' 금액
초도비품	가맹본부	1,000				
초도식자재 (※③)	자율선택	1,500~ 2,000		초도 발주 시	상품 미공급시	
총계	_	35,180~ 65,000		-	_	

<sup>※</sup>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및 직영점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sup>※</sup> 매장의 형태(샵인샵, 고속도로휴게실형, 극장형, 백화점형, 마트형, 일반매장형, 이동형), 점포상황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됩니다.

<sup>※</sup> ① 인테리어 직접시공시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비는 1평당 금22만원

(부가세포함)이며 감리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② 금액은 커피머신 별도 금액입니다. (직접구매 가능)
- ※ ③ 초도식자재 중 SPC에 강제하는 원·부재료외 식자재는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ul><li>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합니다.</li><li>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할 수 있 습니다.</li></ul>
710404	가맹본부 조언시의 절차 상담 후 가맹본부 지역 담당자 배정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상권조사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창업 자금을 고려하여 최적의 점포 확보 최적점포에 대한 입점여부 결정 (이 경우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의 분납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전국 광고	가맹본부	광고시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브랜드이미지광 고, 상품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판촉시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필요시 산정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 사자의 귀책사 유 등을 고려하 여 협의 결정
	가맹본부는 점	범포환경 개선 비	용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기	·맹사업법 제12	
점포환경개 선 비용	책사유에 의		] 자발적 의사에 의 ! 이와 유사한 문제 하지 않습니다.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 한 지원"항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지급의무 발생시	П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사업자의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재고와 비교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 3. 계약 <del>종</del>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도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는 받아야합니다. 또한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 양수도업무 소요비용(가맹본부 직원 출장, 행정업무지원 등 2,200천원(부가세포함)),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커피펍스"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 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또는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구입 요구 품목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커피펍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커피펍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커피/음료수류			
쉐이크 포테이토			
순살치킨			
통오징어			
수제 소세지		1회 위반: 구두 경고	
돈카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피자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	
샐러드 파스타류		지	
세트메뉴와 디저트류			
샘플러			
주류			
계절메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지정업체	공급 및 판매할 수	1회 위반: 구두 경고	

타가맹점사 업자	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용역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역)	없음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에명시된 내역)	l /t배모르/t	홈페이지 공지, 유선, 팩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 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종 영업표지
중불만 집중 함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펍스'와 동일한 업종 (커피, 카페업)	커피펍스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반경 직선거리(점포 간 이격 거리)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 아래 특수상권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1. 왕복 6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 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4. 서울 도심의 복합상권으로 강남역 상권, 교대역 상권, 역삼동 상권, 신
특수상권	사동 상권, 압구정동 상권, 청담동 상권, 논현동 상권, 대학로 상권, 종
	로 상권, 명동 상권, 신촌 상권, 대학 부근 상권 등
	5. 제4항과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
	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대학교, 역
	사,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등

- ※ 단순 유통형태로서, 가맹본부가 컵모양의 SHAKE POTATO 리테일 제품과 가맹점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소재한 극장, 대형마트, 편의점, 지하철, 종합병원, 대형쇼핑몰, 대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기타특수상권 형태 등으로 판매와 개점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와 합의를 통해서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건설 등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 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해 맷사업자동의 → 영업지역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변경 완료 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에 준하는 사유로 영업지역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 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द	·내 온라인·오프라인	] 판매 매출액 비중	<u>.</u>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②</sup>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해약의사가 없을 때 갱신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2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 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조 3항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3항 나목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 키지 않은 경우	제6조 3항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 3항 라목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27조 1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제27조 1항 2호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27조 1항 3호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 의 상호 또는 상표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27조 1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27조 1항 5호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27조 1항 6호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또는 가맹 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27조 1항 7호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 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제27조 1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 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 1항 9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제27조 1항 10호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 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 1항 11호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 우	제27조 1항 1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 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 1항 13호
○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및 양자간 협의한 품목의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제27조 1항 14호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자체조달하여 용도외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 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27조 1항 16호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비용 미결제 한 경우	제27조 1항 15조, 제27조 1항 24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타가맹점에 공 급 또는 경쟁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제27조 1항 16호
○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27조 1항 17호
○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 1항 18호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 1항 19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1항 20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 1항 21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	제27조 1항 22호

변경을 했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	
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제27조 1항 23호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	제35조 1항 2호
점이 불가능한 경우	세00표 1명 2포
○ 본계약의 준수사항 위반 시, 특약사항 위반 시	제27조 1항 25호
○ 가맹점사업자가 3회 이상 필수품목 공급 물류 대금 등의 지급의무 를 지체하는 경우	제27조 1항 2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	제35조 2항 1호
시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5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	제35조 2항 3호
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	
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	
<u>래한 경우</u>	제35조 2항 4호
<u>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u>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35조 2항 5호
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	
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	-10E-7 0-51 0-5
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	제35조 2항 6호
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	
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5조 2항 7호
o 가맹점사업자가 <u>뚜렷이</u>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	2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u>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기</u>	성 제35조 2항 8호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제35조 2항 9호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교육 진행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 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3조 1항
○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주간 상호서면에 의한 이 가능하다	제43조 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이내에 동의 여부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	· 회신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 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이 경우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 양수·도업무 소요 비용(가맹본부 직원 출장, 행정업무지원 등소요비용 2,200천원(부가세포함)),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 인 → 교육 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 인 → 교육 수료	
업무위탁	불가능	_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기괴 기괴 기괴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월 25일 이상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 족, 직원	_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본부 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 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월	가맹본부 관리팀	

POS 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 사용 점 검→ 관리표 작성 → 가맹점 확인 후 서명 → 완료	1회/월	가맹본부 관리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가맹본부 관리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부담비율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브랜드이미지 광고, 상품광고	실시할 기	경우 협의 후 진행	가맹사업자와 협의후 광고 계획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전체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등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개별 행사	<u> </u>	]사에 따라 (별도공고		행사 계획 공고 → 가 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위약벌, 위약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6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금이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금삼십만원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25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1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가맹희망자 상담	- 전화 상담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사전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10~13페 이지 참조
최종협의 및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 의	D-34~30	171 11 11 11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시설업체에 지급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공사 등	- 공사 실시(기기, 물품입고)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3(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 자율 분쟁 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변호사, 가맹거래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 업체 (가맹분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cmc.kr)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 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내역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법 제12조2의 규정 및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판매촉진,고객관리,위생관리,교육 훈련,회계 등 가 맹점 운영전반에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기간,경영진단 및 지도관계 자의 성명,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일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문의: 영업팀 (031-242-8424)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설비(집기), 판매촉진,고객관 리,위생관리,교육 훈련,회계 등 가 맹점 운영전반에 관한 경영지도	지도대용,기산,경영선단 및 지도단 계자의 성명,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매전사어자에게 제시→격역지드	가맹점 사업자	문의: 영업팀 (031-242-8424)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자금 대출정보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이론, 실습교육	오픈 3일 전까지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 이론	필요시	_
특별 교육	필요시	실습, 이론	필요시	필요시 실시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분 최소시간		내용	비고
		비용	2,200천원 (부가세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신규 교육	4일	이론/1일	인.허가, 세무, 메뉴설명, 서비스,인사,재고등	포스관리 등
		현장실습교육/2일	매장 오픈 및 운영 교육	7시간*2일
		현장실습교육/1일	매장 마감 및 운영 교육	7시간*1일
보수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신 메뉴출시 등
특별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필요시 실시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양자의 함의 하에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위의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교육 비

용은 가맹점사업주가 부담을 한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을 가맹본부에 물을 수 없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8조에 따라 가맹점의 관리자로서 근무 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서 제27조 1항에 따라 가맹점 운영권 제한 및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31-242-842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7   0 D 1 1 1 D 0 1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예치가맹금		₩		(급		원 정)
신청인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맹사업거래의 공정 2항에 따라 위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	치기관의 장 귀'	<del>∑</del> l.				
	지점장	YI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 ■ 가맹희망자 보관용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 수 령 하 였 음 )
	※" <b>수령하였음</b>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선 제 이 근데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
⑥ 수령확인문구	수 령 하 였 음 )
	※" <u>수령하였음</u>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sim$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별첨4] 가맹본부 재무제표 전체 2023년, 2022년, 2021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